

제24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9 월 13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조례 제2135호

붙임 여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135호

여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기타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단지 및 광역단지·지구조성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 협력 강화방안
9.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0.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업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농업환경의 유지·개량 실적
2. 친환경농업의 생산·유통 실적
3. 친환경농업의 개발·보급 실적
4. 친환경농업의 교육·훈련 실적
5. 화학비료 감축 및 퇴비, 유기질비료 공급실적
6.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자체 자원 순환사용 실태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사업 평가결과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마을이나 단체 수상자는 다음해 친환경농업분야의 상사업 대상자로 우선선정하며, 개인수상자는 별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줄 수 있다.

제17조제3항 중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을 “개인, 마을, 단체, 기관, 공무원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개인, 마을, 단체 등 수상자는 다음 연도 친환경농업분야 지원 사업 시 우선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생략) <u><신 설></u></p>	<p>제3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u> <u>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u> <u>3. 합성농약, 화학비료, 향생·항균제 기타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u> <u>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u> <u>5. 친환경농업단지 및 광역단지 · 지구조성 육성방안</u> <u>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u> <u>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u> <u>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 협력 강화방안</u> <u>9.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u> <u>10.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u>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17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①

· ② (생 략)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사업 평가결과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마을이나 단체 수상자는 다음해 친환경농업분야의 상사업 대상자로 우선선정하며, 개인수상자는 별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줄 수 있다.

제17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개인, 마을, 단체, 기

관, 공무원 등을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개인, 마을, 단체 등 수상자는 다음연도 친환경농업분야 지원 사업 시 우선지원 할 수 있다.